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조계원 · 백승아
박해철 · 김주영 · 강준현
김 윤 · 김병기 · 박홍근
윤종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「스포츠기본법」은 ‘장애인스포츠’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,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「생활체육진흥법」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은 ‘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’, ‘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’, ‘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’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,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‘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

조직의 활동 지원'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
4의3.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4의4.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	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의2.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4의3.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</u>
<u><신 설></u>	<u>4의4.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</u>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